

재단법인 나라 정관

제 정 2005. 1. 28
(일부개정) 2011. 5. 17
(전부개정) 2014.12. 26
(일부개정) 2016. 2. 18
(일부개정) 2023.12.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쪽배·산천어축제 지원 및 화천군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지원과 화천산천어 생산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 상품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나라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나라(이하“재단”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137에 두며, 필요시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해당 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개최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사업의 위탁운영

3. 화천군 발전을 위한 관광, 향토산업의 추진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상품에 관한 모든 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 까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업의 집행)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 ③ 요금, 사용료 등 결정
-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부이사장 1인
- ③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 ④ 감사 2인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군 관광분야 관련 소관과장 1인
2. 군 문화예술분야 관련 소관과장 1인
- ③ 당연직 이사 중 군 관광분야 관련 소관과장은 부이사장으로 한다.
- ④ 선임직 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제11조(이사장의 권한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모두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수행요건) 임원의 직무 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①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 ②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군수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에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5조(임기) ①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연임 시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직 이사의 경우에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 판단되는 때
4.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재단의 설립목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제한) 다른 재단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사는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

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운영본부 및 직원

제20조(운영본부)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법인 내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본부에는 본부장과 사무국장 그 밖에 필요한 직책 및 직원을 둔다.

③ 본부장은 이사 또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이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다.

④ 운영본부의 조직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21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③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직원의 결격사유) 제17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운영본부의 조직 등) ① 운영본부의 조직, 복무, 보수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운영본부의 정원,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재단의 이사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 당연직이사, 선임직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의결한다.

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0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

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각종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32조(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33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2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름과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4조(설치) 재단의 운영 및 자문을 위하여 재단 내에 소관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군에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출연한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등의 부동산
3.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4. 사업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재단 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5.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시·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3. 기부금 및 협찬금
4. 그 밖에 수입금 등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⑤ 재단은 기본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43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이사장은 재단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사업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관광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④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기본재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⑤ 보통재산 및 기본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3항 및 제4항의 경
 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제38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에 한해 화천군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을 접수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관광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재단법인 나라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③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시·군·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등

④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 및 시·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에 수입금 등

⑤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운영방법은 기금운용심의회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이사장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재단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1조(사업계획 등의 작성) ①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군의 관광문화 시설 운영 및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43조(결산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잉여금의 처리) 보통재산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분야 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출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군수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정관의 변경) 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민법」 제4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재단의 기본재산) 제36조 제4항에 따른 [별지 1]기본재산 목록의 출연금(현금)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기로 하여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으로 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화천군에 귀속된다.

제53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5조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재단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직무수행요건(제12조 관련)

직위명 : 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예산 및 결산, 정관의 개정, 재단의 해산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중요재산 취득·처분, 기채 및 임대차,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재단의 사업계획, 각종 대행사업의 위·수탁,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기구 및 정원 변경,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마. 기타 관련 업무

-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의결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예산, 기구 및 정원의 증·감, 수익사업 등 심의·의결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의지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정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임원 지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 능력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성숙한 주민의식 수준과 준법정신 의지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경력

○ 자격증

○ 기타 능력

자격요건(제13조 관련)

< 재단법인 나라 임원의 자격요건 >

재단법인 나라 임원으로 채용되려면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① 학력요건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대학교 졸업 이상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② 자격증 요건

-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세무사 또는 법무사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11년 이상인자
- 기술사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기능장 또는 기사자격증 취득 후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 공무원 경력기준

-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 이었던 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④ 민간경력기준

-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기관장·이사·감사 등의 임원 자격요건은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부당하게 응모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등

구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용 및 준수사항	비고
자격 및 가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산천어를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천어 상품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 연중 90일 이상 생산에 종사하는 자 ○ 법인 단체 가입 시 주소, 성명, 주민번호, 생산규모(생산량 및 연간판매액) 및 연중 생산 일수를 적은 신청서 제출 할 것. 	
권리 및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원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각종사업 참여 및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 ○ 단체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및 자체품질기준 및 관리계획서 등 제반 규정 준수 - 법인의 성실참여 및 부담금 납부 준수 - 법인의 의결사항 시행 및 지도·지원 -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 자체관리 및 관리방안 등 관련 규정 준수 	
탈퇴 및 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퇴를 원하는 단체원은 30일전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때 - 파산 또는 해산한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원은 제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의 사업을 방해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 기타 단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총회개최 10일전 제명사유 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부여 	
단체표장 사용범위 및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법인 및 소속 단체원 만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같은 단체표장의 사용 시 사용방법과 절차 등 사용조건을 정 할 수 있다. 	
생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표시 상품을 생산하고자하는 단체원은 당해 연도 생산 계획을 매 회계연도 1월말까지 총생산계획량, 등급별(특,상,보통)생산계획량을 기재한 서류를 법인에 제출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원은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화천 산천어 상품의 특정 품질 및 명성, 지리적 환경요인,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품질 등 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 관리방안은 본 정관의 부속 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별지 1]

기본재산목록

구 분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출연금(현금)	예금통장	4,477,000,000	-